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중

1. 의결주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641호, ‘20. 12. 8. 공포, ’21. 6. 9. 시행)됨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실태조사의 주기·방법·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사회에 고지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서 서식 상 사진 크기를 확대하여 식별 용이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5. 0. ~ 6.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의 제목 “(고지정보의 정정 요청 등)”을 “(고지정보 및 공개정보의 정정 요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고지정보 정정”을 “고지정보 및 공개정보 정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고지정보 정정 요청의”를 “고지정보 및 공개정보 정정 요청의”로, “고지정보 정정 요청 결과”를 “고지정보 및 공개정보 정정 요청 결과”로 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3년마다 실시한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통 실태 등에 관한 사항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피해에 관한 사항
3.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국민 인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한 사항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를 “장이”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요청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의 동의서 1부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 본인의 동의서 1부

제8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취업자등 본인의 동의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신청인 제1호 중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를 “장이”로 하고, 같은 신청인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신청인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신청인 나목 중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을 “취업자등”으로 한다.

2.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요청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의 동의서 1부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중

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 본인의 동의서 1부

○ ○ 경 찰 서

수 신 수신자 참조

제 목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통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통지합니다.

성매매 피해아동 · 청소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기타 연락처	
	재학 여부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 (친권자)	성 명		전화번호	
	관 계		실질적 보호 여부	☐ 보호 중 ☐ 미보호
실질적 보호자 ※ 필요시	성 명		전화번호	
	관 계			

사건 내용	피해 사실				
	발견 경위				
	사건 담당자	성명		소속	
		전화번호		계급	

지원 내용	경찰	※ 국선번호인 선임요청 등 경찰 수사과정에서 지원한 사항
	지원사항	
	지원 필요사항	

○ ○ 경찰서장 직인

수신자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고 지 정 보 서

제 20〇〇-〇〇 호

년 월 일

이 고지정보서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 중 아동·청소년을 세대원으로 둔 세대 및 관련 기관(아래 참조)에 송부하는 것입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교교과교습학원,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와 경계를 같이 하는 인근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등

(사진촬영일 : 0000년 00월 00일)

정면 사진		좌측 사진		우측 사진		전신 사진
이름		나이		신체정보 (키·몸무게)		
주민등록상 주소		(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지,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내 거소)				
실제 거주지						
성범죄 요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죄명, 횟수)						
전자장치부착여부						
부가기록		<i>#부가기록 작성 예시</i> 위 고지대상자는 신규 우편고지대상자임. 위 고지대상자가 위 거주지로 전입하였음. 위 고지대상자는 동일한 읍면동내에서 실거주지가 변경됨.(변경정보등록일 : 2020.11.03.) 위 고지대상자가 위 기재된 실제거주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였음.(변경정보등록일 : 2020.11.03.)				
참고사항		고지정보서를 송부받은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장은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여야 함				

유의사항

1. 이 정보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개(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하거나 공공장소 게시 등을 통해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형법」 제307조제1항 등).
2.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이 아닌 곳에서 고지대상자의 고용, 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에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귀 세대(기관)에서 이 고지서를 받은 시점에 고지대상자가 고지된 실제 거주지에 살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실제 거주지가 사실과 다른

경우 국민신문고,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로 알려주시면 처리결과를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성범죄자알림e 다운로드 및 설치



(iOS)



(안드로이드)

여 성 가 족 부 장 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부 칙

이 영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u>고지정보의 정정 요청</u> 등) ①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 른 고지정보의 정정 요청은 별 지 제18호서식의 <u>고지정보 정정</u> <u>요청서</u> (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제7조의2(<u>고지정보 및 공개정보의</u> <u>정정 요청 등</u>) ① ----- ----- ----- <u>고지정보 및 공</u> <u>개정보 정정</u> ----- -----.
② 영 제22조의2제6항 단서에 따른 <u>고지정보 정정 요청의 처</u> <u>리 결과 통지</u> 는 별지 제18호의2 서식의 <u>고지정보 정정 요청 결</u> <u>과 통지서</u> (전자문서로 된 통지 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② ----- --- <u>고지정보 및 공개정보 정</u> <u>정 요청의</u> ----- ---- <u>고지정보 및 공개정보 정</u> <u>정 요청 결과</u> ----- -----.
<u><신 설></u>	제7조의3(<u>아동 · 청소년성착취물</u> <u>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u>) ①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u>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u> <u>실태조사</u> (이하 “ <u>실태조사</u> ”라 한 다)는 3년마다 실시한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u>아동 · 청소년성착취물 유통</u> <u>실태 등에 관한 사항</u> 2. <u>아동 · 청소년성착취물 피해</u> <u>에 관한 사항</u>

제8조(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교육장 또는 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국민 인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한 사항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① -----

-----.

1. ----- 장이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의 동의서 1부 <u><신 설></u> 2.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가. (생 략) 나. <u>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 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 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 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 본인의 동의서 1부</u> ② ~ ⑦ (생 략)	----- ----- <u>1의2.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요 청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관 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의 동의서 1부 또는 아동·청소 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중이거 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 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 본인의 동의서 1부</u> 2. ----- ----- 가. (현행과 같음) 나. <u>취업자등 본인의 동의서 1부</u> ② ~ ⑦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연 락 처	(02) 2100 - 6405